



제 433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사실적시 사이버 명예훼손 폐지 등〉

■ 이용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651호)

2026. 3.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사실적시 사이버 명예훼손죄 폐지	3
2. 사실적시 사이버 명예훼손의 민사적 배상 책임 전환 및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 도입	8
3.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친고죄 변경	1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용우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6. 2. 6.

다. 회 부 일 : 2026. 2. 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정보통신망을 통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명예훼손을 방지하여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가 있으나, 실제로는 공익적 목적의 사실 제시나 비판적 표현까지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사회 각 분야에서 내부고발이나 공익제보, 갑질·성폭력·임금체불 피해 폭로 등은 사회적 부조리를 바로잡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으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이 같은 공익적 행위마저 형사처벌의 위협에 노출시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음. 특히, 온라인상 의견 표명과 문제제기가 활발한 현실에서 사실의 적시만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한 현행법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위축시키고, 권력·경제력을 가진 자가 형사절차를 이용하여 비판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큼.

미국·영국 등 다수의 해외국가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없거나

폐지했으며, 유엔 인권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를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와 민사 책임으로의 전환을 권고했음.

이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조항을 삭제하고, 정보통신망에서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전환하며, 민사적 배상 책임으로 전환하여 정보통신망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의 조화를 이루려는 것임(안 제70조제1항 삭제 등).

Ⅲ. 검토의견

1. 사실적시 사이버 명예훼손죄 폐지(안 제70조 제1항 삭제)

가. 개정안 요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함(안 제70조 제1항 삭제).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0조(벌칙) <삭제>

다. 검토사항

- 현행 「형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허위사실 명예훼손죄)¹⁾.

○ 또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사자 명예훼손죄)²⁾,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각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³⁾.

○ 한편, 정보통신망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사이버 명예훼손죄)⁴⁾.

1)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대한 특별규정으로, 정보통신망의 특성상 정보의 확산 속도가 빠르고 정보의 반복·재생산 등으로 인한 피해가 커 일반 명예훼손에 비해 가중처벌할 필요성이 있음을 고려한 것임.

<현행법상 명예훼손죄 체계>

구분		구성요건	법정형
형 법	사실적시 명예훼손 (제307조 제1항)	공연히 <u>사실</u> 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 명예훼손 (제307조 제2항)	공연히 <u>허위의 사실</u> 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사자 명예훼손 (제308조)	공연히 <u>허위의 사실</u> 을 적시하여 <u>사자</u> 의 명예를 훼손한 자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제309조)	<u>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u> 공연히 <u>사실</u> 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3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u>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u> 공연히 <u>허위의 사실</u> 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정 보 통 신 망 법	사실적시 사이버 명예훼손 (제70조 제1항)	<u>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u> 공공연하게 <u>사실</u> 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 사이버 명예훼손 (제70조 제2항)	<u>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u> 공공연하게 <u>거짓의 사실</u> 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그런데 이 중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심리적 위축에 의해 표현의 자유가 제약되는 문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건전한 비판을 막는 도구로 악용하는 문제 등을 이유로 폐지 또는 축소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⁵⁾.
- 이에 개정안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사실적시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폐지하여 사실의 공개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으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공적 행위에 대한 비판을 활성화하려는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첫째, 거짓이 아닌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제재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음.
- 헌법재판소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관한 재판관 9인 중 5인의 의견으로 형법 제307조 제1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존치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음⁶⁾.
- 이에 따르면 개인의 외적 명예는 일단 훼손되면 완전한 회복이 어려움에도 사실적시의 매체가 다양해짐에 따라 명예훼손적 표현의 전파속도와 파급효과가 광범위해지고 있고,

5) 조서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논점, 2018.3.29.

6) 2021.2.25. 2017헌마1113, 2018헌바330(병합)

- 명예와 체면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의 특성상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등 그 사회적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 형법 제310조에서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여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의한 표현의 자유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⁷⁾,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음.
- 둘째, 사이버 명예훼손죄 개정은 형법상 명예훼손죄 개정 경과에 맞추어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행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은 모두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특별규정으로서 사실적시 사이버 명예훼손만을 폐지할 경우 형법과의 정합성에 반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안에 대해서는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 논의 경과를 반영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삭제하여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등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에 공

7)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감하며, 형법 제307조 제1항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존치되는 점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는 형법 개정논의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전제로 수용의견을 제출함.

2. 사실적시 사이버 명예훼손의 민사적 배상 책임 전환 및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안 제44조의10제8항부터 제10항)

가. 개정안 요지

- 사실적시 사이버 명예훼손의 형사 책임을 민사적 배상 책임으로 전환하는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함(안 제70조 제1항).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법률 제21305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4조의10(손해배상) ① ~ ⑦ (생략) <u><신설></u>	법률 제21305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4조의10(손해배상) ① ~ ⑦ (현행과 같음) <u>⑧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 손해를 끼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u>

다. 검토사항

- 미국·영국 등 국가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했으며, 유엔 인권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 및 민사 책임으로의 전환을 권고한 바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의 형사책임 체계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체계로 전환하되, 반복적 명예훼손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정보통신망 내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인격권 보호와의 실질적인 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으로의 전환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첫째, 형사처벌을 폐지하면서 동시에 제재적 성격이 강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것은 모순적인 측면이 있어 검토가 필요함.
- 개정안은 제70조제1항을 삭제함으로써 국민들이 형사처벌을 우려하여 공익적 표현을 주저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는데,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으로 전환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도리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음
- 따라서 형사처벌이 과도한 규제라는 이유로 폐지되는 경우라면, 그 대안으로 도입되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으로의 전환 등이

단순히 국가에 의한 처벌권 삭제에서 나아가 실질적으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므로,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둘째, 경제력 있는 자의 전략적 봉쇄소송으로 악용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전략적 봉쇄소송이란 시민의 공적 참여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는 자가 시민의 공적 참여를 위축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제기하는 소송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자가 상대적 약자의 공적 사안에 관한 표현의 자유 및 청원권의 행사를 위축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임⁸⁾.
- 형사소송 절차에서는 수사기관이 공익성 여부를 1차적으로 판단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여과 장치'가 작동하나, 민사적 책임으로 전환될 경우 이러한 국가적 필터링 없이 곧바로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될 것으로 보이고, 민사소송은 소제기부터 변호사 선임, 입증 책임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바, 자금력이 우월한 기업이나 권력자가 이를 이용해 상대적 약자의 공적 발언을 억압하는 '전략적 봉쇄소송(SLAPP)'⁹⁾도 구로 전략할 위험이 있으며,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8) 김상유, '법은 어떻게 입막음 소송을 막을 수 있는가?: 국내의 전략적 봉쇄소송 규제 법안에 관한 비판적 검토', 아주법학, 2021.8.

시 이러한 경제적 위협의 정도가 더 커질 것으로 보임.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삭제 및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전환에는 동의하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표현의 자유와 밀접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 해외 주요국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고려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가중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용 범위 및 배상 수준 등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3.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친고죄 변경(안 제70조제3항)

가. 개정안 요지

- 허위사실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에서 친고죄로 변경함
(안 제70조 제3항).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0조(벌칙) ② (생략) ③ <u>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u>	제70조(벌칙) ② (현행과 같음) ③ <u>제2항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u>

다. 검토사항

-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범죄가 발생하면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국가가 형사소추를 하는 국가소추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⁹⁾, 형법과 일부 특별법은 국가소추주의의 예외로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를 두고 있음¹⁰⁾.
 - ‘친고죄’란 범죄의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이고,

9) 「형사소송법」 제246조(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10) 이회경,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근거와 현행법제의 타당성 연구”, 피해자학연구(2013년), p265~p266

-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소추를 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그 의사에 반하여 소추할 수 없도록 하는 범죄임.
-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 등의 처벌 희망 의사표시가 소송 조건이 되는 점에서 본질이 유사하나,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적극적 기능을 하는 친고죄와 달리 소극적 기능을 하는 반의사불벌죄는 국가형벌권의 행사 가능성을 다소 넓혀 공익적 관점을 강화하려는 측면이 있음¹¹⁾.
- 어떠한 범죄를 친고죄로 규정하는 것은 개인적 법익의 침해에 대한 보호를 적극적으로 해당 개인의 처분권에 일임함으로써 국가형벌권의 개입을 가능한 한 제한하려는 것이고,
-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는 것은 피해자 의사를 존중하되 범죄 피해의 심각성과 사회적 해악성을 고려하여 친고죄에 비해 국가의 개입 가능성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 따라서 어떠한 범죄를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로 정할 것인지는 범죄 피해의 중대성과 사회적 해악성, 공소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과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공소권 행사를 제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수 있는 문제로서, 입법부에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영역임¹²⁾.

11) 윤동호, “피해자의 의사와 형사절차”, 피해자학연구 제14권제1호(2006), p133

12) 헌법재판소 2021. 4. 29. 선고, 2018헌바113결정

- **현행법상 친고죄**에는 **비밀침해죄** 및 **업무상 비밀누설죄**¹³⁾와 **일부 친족 간 권리행사방해·절도 등 재산죄**가 있으며¹⁴⁾,
반의사불벌죄에는 **단순·존속폭행죄**¹⁵⁾, **과실치상죄**¹⁶⁾, **단순·존속협박죄**¹⁷⁾ 등이 있음.
- **명예에 관한 죄의 경우를 살펴보면**, 형법상 **사실적시·허위사실 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허위사실 사이버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고,
형법상 사자명예훼손과 **모욕죄**는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음¹⁸⁾.

-
- 13) **제316조(비밀침해)** ①봉합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봉합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 제317조(업무상비밀누설)** ①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가 그 직무처리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있던 자가 그 직무상 지득한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제318조(고소)** 본장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14)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44조(친족간의 범행)**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
- 15)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16)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17)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그런데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는 것에 대하여, 개인의 명예에 관한 죄를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의 고발에 의해서도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부적절하며, 이른바 ‘고발사주’ 등 제3자의 고발 남용에 따라 명예훼손죄가 정치적·사회적으로 악용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허위사실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변경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를 보다 존중하고, 제3자에 의한 고발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첫째,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친고죄가 아닌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현행법의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친고죄**의 범위를 넓게 설정하면 고소가 있어야 수사 및 형사소추가 개시될 것이므로 피해자의 의사를 폭넓게 존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피해자가 범죄자의 보복 또는 사회적 평판이 두려워 고소를 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고,
- **반의사불벌죄**의 범위를 넓게 설정하면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 및 형사소추가 개시되어 범죄자의 손해배상과 합의를 촉진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도 고소가 없는 상태

18)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에서 수사가 개시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어느 한 쪽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 반드시 합리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¹⁹⁾.

○ 따라서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변경하는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폭넓게 존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① 피해자가 범죄자의 보복 또는 평판 악화를 우려하여 고소를 주저하거나, 가해자가 피해자의 고소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를 위협·강요할 우려가 있고,

② 명예훼손에 관한 수사 등의 종결권을 피해자에게 부여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에서 분쟁해결을 촉진하고 존중하려는 반의사불벌죄의 취지를 약화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허위사실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친고죄가 아닌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것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음²⁰⁾.

○ 둘째, 사이버 명예훼손죄 개정은 형법상 명예훼손죄 개정 경과에 맞추어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행 형법상 사실적시·허위사실 명예훼손과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은 모두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음.

19) 헌법재판소 2021. 4. 29. 선고, 2018헌바113결정

20) 헌법재판소 2021. 4. 29. 선고, 2018헌바113결정

-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특별규정으로, 사이버 명예훼손죄만을 친고죄로 변경하는 경우 형법과의 정합성에 반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안에 대해서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친고죄 개정 여부를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참고로, 현재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변경하려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수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²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3자의 무분별한 고발을 방지하고, 피해자의 의사를 보다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형법상 거짓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아직 친고죄로 전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친고죄 전환 여부는 형법 개정 논의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전제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방송미디어심의위원회는 사실을 공연히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는 정보통신망에서 빠르고 광범위하게 확산되므로 여전히 규제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고, 형법과의 법적 통일성, 형평성, 정합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문 의 처

02)6788-5228

21) 의안번호 제2203388호(최기상의원 대표발의), 제2204572호(전현희의원 대표발의), 제2204817호(조국의원 대표발의)